

[별지 제1호서식] (규칙 제4조 관련) <개정 2021. 6. 23.>

## 정 보 공 개 청 구 서

| 접수 번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  | 처리기간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청 구 인 | 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생년월일(성별) ( )   |
|       | 주소(소재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사업자(법인·단체)등록번호 |
|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팩스번호 | 전자우편주소         |
| 청구 내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공개 형태 | [ ] 열람·시청 [ ] 사본·출력물 [ ] 전자파일 [ ] 복제·인화물 [ ] 기타( ) |      |                |
| 수령 방법 | [ ] 직접방문 [ ] 우편 [ ] 팩스전송 [ ] 정보통신망 [ ] 기타( )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수 수 료 | [ ] 감면 대상임 [ ] 감면 대상 아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| 감면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「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(○○○ 선거관리위원회) 귀중

### 접 수 증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 번호 | 청구인 성명              |
| 접수 부서 | 접수자 성명<br>(서명 또는 인) |

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 선거관리위원회

### 유 의 사 항

-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.
-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주) 소속기관의 경우 “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”를 소속기관으로 고쳐 사용한다.

210mm×297mm [일반용지 80g/m<sup>2</sup>]